

16. 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 早期解消

資料提供：建設部

- 건설부는 도시의 필수기반시설인 도로, 광장등을 도식계획으로 결정한후 장기간동안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사유재산권행사 및 행위제한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년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3년내('93~'95)에 지방재정등 가용재원 총 5조9,600억원을 집중투자하여 11.7km²를 조기에 해소토록 하고
- 동 조기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중 당해 도시의 도시계획체계를 근본적으로 흐트러뜨리지 않는 불요불급한 시설은 도시계획의 변경(해제, 조정등)을 검토하도록 '92. 7. 일 시도에 지시하였음.

건설부에 따르면 '91. 12월말 기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1,295km²(공원·녹지 941km²제외)로서 이중 63%에 해당하는 817km²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37%에 해당하는 478km²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집행시설 전체면적중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는 도시계획결정 전체면적(1,295km²)의 3%에 해당하는 33.4km²이며 이의 해소를 위하여는 13조9,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건설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수립한 2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종합하여 '93~'95까지 3년동안 총 5조9,600억원을 집중투자하는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여 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의 조기해소를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은 당해도시의 지방재정형편등 집행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장기미집행시설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구하고 위 조기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중 당해 도시의 도시계획체계를 근본적으로 흐트러뜨리지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

시계획 변경(해제, 조정등)을 검토하도록 시도에 지시하였음.

건설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등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446호)을 개정('89. 3. 7)하여 도시계획 저촉토지에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위 토지의 은행 담보,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사업예상시기와 보상에정금액등을 통보함으로써 은행담보가 가능하도록 재무부와 협의하여 금융기관과 시도에 지시하는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한편 특히 “'93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해소를 위한 중점투자지침을 반영토록 내무부에 요청한 바 있음.

금번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95년까지 지방재정등 가용재원을 2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중점투자하고 그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변경(해제·조정등) 검토를 이행하게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해소를 촉진하고 국민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결정 및 미집행현황

단위 : km²

구 분	결정총계 (A)	미집행 총계		10~20년 미집행		20년이상 미집행	
		(B)	B/A	(C)	C/A	(D)	D/A
계	1,295.2	478.3	37	221.2	17%	38.5	3%
도로	664.7	337.6	51	169.2	25	33.0	5
광장	26.5	10.1	38	2.2	8	0.4	2
유원지	113.7	73.0	64	44.5	39	5.0	4
주차장	2.0	0.8	40	0.2	10	-	-
철도	20.1	1.7	8	0.6	3	-	-
시장	6.2	1.1	18	0.2	3	0.01	0.1
운동장	51.8	13.9	27	1.6	3	0.05	0.01
하수도	13.5	3.1	23	0.4	3	-	-
정류장	5.0	1.8	36	0.1	2	0.01	0.2
공용의청사	8.5	1.4	16	0.1	1	-	-
학교	174.3	13.0	7	1.4	0.8	0.03	-
수도	19.0	1.2	6	0.1	0.5	-	-
하천	99.9	8.0	8	0.4	0.4	-	-
전기공급	6.7	0.1	1	-	-	-	-
기타	83.3	11.5	14	0.2	0.2	0.03	-

* 공원·녹지제의